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4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원 관세 면제(윤영석의원안, 이연희의원안)	3

I. 개요

1.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10. 20.
- (3) 회 부 일 : 2025. 10.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3조제19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원 관세 면제(운영석의원안, 이연회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특정물품의 면세(§93)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신 설>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자원의 관세 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운영석의원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것 등.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세 제한 가능(이연회의의원안) ○ (시행일) - 운영석 의원안: 공포 후 6개월 - 이연회 의원안: 공포 후 즉시

* 운영석의원안 2025. 10. 17. 발의(의안번호 13629), 이연회의의원안 2025. 10. 20. 발의(의안번호 13642)

☐ 개정안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목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93조¹⁾는 국제친선이나 사회정책, 문화정책, 산업정책

1)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도는 관세법운용의 합리성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위해 행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중 다른 곳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들을 모두 모아 규정한 조항임.

- 2건의 개정안은 「관세법」 제93조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²⁾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이하 “해외자원개발자원”)을³⁾ 추가하여 해당 자원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세법」 제93조에 따르는 특정물품의 면세 항목]

구분	면세대상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2.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희토류, 구리, 아연, 천연흑연 등이 있음

구분	면세대상
	다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첫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확보한 자원에 대해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문조사(2022년 8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자금 조달 애로’
가 30.8%로 가장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⁴⁾

또한, 최근 러-우전쟁,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글로벌 공급
망 재편 및 자원의 무기화로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과 같이 해외자원개발자
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 될 경우
국가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할당관세 제도를 통한 관세 감면·면제에 비해 불확실성을 해
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경제
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체제로 인
한 지속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해
외자원개발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여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경우 근본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했으나 자원확보 성과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거 해외자원개발이 단기간 M&A, 소지분·비운영사업 투자 등 외

4) 한국경제인협회,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 2022. 8.

형확장식 자원개발에 치중되었고 안정적인 공급망 조성을 위한 운영권 확보 사업과 같이 내실 있는 투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⁵⁾

2013년 말 기준 석유공사·가스공사·민간기업의 193개사업 중 운영권사업은 61개(31.6%), 광물공사의 36개 투자사업 중 실질적 운영권사업은 2개(6%)에 불과하였음.⁶⁾

또한, 2014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시 해외개발자원의 국내 도입량을 검토한 결과, 민간 4개사가 확보한 12.5만 배럴/일 중 16.8%만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3.2%는 자원보유국의 국내판매 의무 등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음.⁷⁾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 중 국내 도입량은 약 17% 수준으로 저조하였음.⁸⁾

둘째,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사업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2025년 예산 390억원, 2026년 예산안 710억원)을 통해 민간의 탐사·개발·생산사업 등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대어해주고 있음.

특히 탐사사업의 경우 특별융자 제도가 운영되어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고, 실패 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2013. 10.

6)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안)’, 2014. 9.

7)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2015. 11.

8)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20. 5.

면제됨.⁹⁾

한편,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하여 운영석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회의의원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령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규정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점과 기타 법률 조항과의 정합성¹⁰⁾을 고려하여 운영석의원안과 같이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9)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제13조(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황이 불가능한 경우